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임관 시 장기복무 장교에 포함 〉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11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성일중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
3. 회부연월일 : 2024. 8.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형(銓衡)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임관하였어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복무 의욕 저하에 따른 조기 이탈로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임관 시 장기복무 장교에 포함하고, 의무복무기간도 6년에서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10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생략)	제6조(복무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 -----.
1. <u>사관학교</u> 를 졸업한 사람	1. <u>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 -----.
1. <u>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u> 를 졸업한 사람	1. <u>국군간호사관학교</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 -----.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략)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u>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u>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 7. (생략) ② ~ ⑥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국군간호사관학교</u>----- ----- ----- ----- ----- ----- ----- ----- ----- ----- -----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4년제 대학의 2년 수료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3학년으로 편입시켜 2년의 생도과정 교육 후 일반학, 군사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매년 약 490여명을 육군

소위로 임관시키고 있음.

[교육과정의 변화]

연도	1968	1974	1983	1996	2004	2024
법령	단기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목적	육·해·공 단기복무 장교양성 교육			육군 장교 양성 교육		
모집 / 교육기간	1기~19기 고졸+2년 *전문학사 학위 수여		20기~32기 4년제 대학 2년 수료이상, +1년 이내 전문대졸 *학위 없음		33기~59기 4년제 대학 2년 수료이상, +2년 전문대졸 *일반학, 군사학 학사학위 수여	

자료: 국방부

□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형(銓衡)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 1)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임관 2년차부터 전형을 거쳐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이 완료된 육군3사관학교 장기복무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율은 약 95%이고 선발률은 임관 인원 대비 약 73%, 지원 인원 대비 77% 수준으로 임관연도별 약 355여명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고 있음.

[육군3사관학교 장기복무 선발 현황]

(단위 : 명)

임관 연도	임관 연차	임관 인원	지원 인원	선발 인원	지원율 (%)	선발률(%)		비고
						임관:선발	지원:선발	
2010년	14년차	494	469	365	94.9	73.9	77.8	선발 완료
2011년	13년차	493	470	380	95.3	77.1	80.9	
2012년	12년차	481	457	347	95.0	72.1	75.9	
2013년	11년차	480	454	349	94.6	72.7	76.9	
2014년	10년차	485	452	333	93.2	68.7	73.7	
2015년	9년차	491	445	327	90.6	66.6	73.5	진행 중
2016년	8년차	496	432	310	87.1	62.5	71.8	
2017년	7년차	483	430	306	89.0	63.4	71.2	
2018년	6년차	492	422	283	85.8	57.5	67.1	
2019년	5년차	489	437	261	89.3	53.4	59.7	
2020년	4년차	498	428	187	85.9	37.6	43.7	
2021년	3년차	483	416	204	86.1	42.2	49.0	
2022년	2년차	477	369	180	77.4	37.7	48.8	

자료: 국방부

□ 한편,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이하 “학군장교”라고 함)와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이하 “학사장교”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라고 함)의 선발이 완료된 장기복무 선발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기복무 지원율이 육군3사관학교 출신은 평균 95%인데 반해,
학군장교와 학사장교는 각각 평균 25.7%, 52.9% 수준임.

[선발이 완료된 학군 장교 장기복무 선발 현황]

(단위 : 명)

임관 연도	임관 연차	임관 인원	지원 인원	선발 인원	지원율 (%)	선발률(%)		비고
						임관:선발	지원:선발	
2010년	14년차	3,938	864	462	21.9	11.7	53.5	선발 완료
2011년	13년차	4,009	819	464	20.4	11.5	56.5	
2012년	12년차	4,291	1,035	515	24.1	12.0	49.8	
2013년	11년차	4,384	1,294	585	29.5	13.4	44.9	
2014년	10년차	4,450	1,444	543	32.5	12.2	37.6	

자료: 국방부

[선발이 완료된 학사 장교 장기복무 선발 현황]

(단위 : 명)

임관 연도	임관 연차	임관 인원	지원 인원	선발 인원	지원율 (%)	선발률(%)		비고
						임관:선발	지원:선발	
2010년	14년차	669	333	155	49.8	26.9	54.1	선발 완료
2011년	13년차	590	281	130	47.6	26.3	55.2	
2012년	12년차	816	531	148	65.0	15.9	24.5	
2013년	11년차	808	464	157	57.4	19.6	34.1	
2014년	10년차	594	265	104	44.6	17.5	39.2	

자료: 국방부

이는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은 대부분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직업
군인으로서 장교로 임관하고 있으며,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또한
전형을 통하여 일부 직업군인의 길로 진입하지만 상대적으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위해 임관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개정안은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임관 시 장기복무 장교에 포함하고, 의무복무기간도 현행 6년에서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10년으로 조정²⁾하려는 것으로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간부들의 복무동기 강화와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임.

이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양성한 우수인력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 투입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육군3사관학교의 간부 1인당 양성 비용이 학군장교나 학사장교에 비해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임.

[간부 1인 양성 비용]

(단위 : 억원)

계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
1인당 양성 비용	2.7억	1.4억	0.25억	0.23억
교육기간	4년	2년	2년	16주

자료: 국방부

- 2)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 2.~3. (생략)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이하 생략)

□ 다만,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임관시 장기복무장교에 포함하면,

① 인력운영 측면에서 육군3사관학교 임관연도별 임관 인원의 약 73%가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로 전환이 된다면 다른 획득경로로 임관한 장교(학군장교, 학사장교 등)의 장기복무 선발 소요가 감소하여 선발 경쟁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② 이에 따라 다른 획득경로로 임관한 장교의 장기복무 선발률이 감소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예상되며,

③ 다른 획득경로로 임관한 장교의 장기복무 선발이 어려워지면 결국 지원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의 지원을 감소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최근 5년간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 지원율]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학군 지원율	3.0:1	2.7:1	2.5:1	2.3:1	1.6:1
학사 지원율	2.8:1	2.4:1	2.6:1	2.4:1	2.1:1

자료: 국방부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로 전환되면 육군의 연간 장기복무 소요(약 1,200석)가 육군3사관학교 졸업 인원(약 460명) 만큼 감소하게 되어 학군·학사 등 타 출신 장교의 장기복무 선발 경쟁률이 기존보다 2배 증가할 것이 예측

됨(3.2 : 1 → 6.3 : 1).

[육군3사관학교 장기복무 전환시 전체 장기복무 선발 예상 경쟁비]

구 분	총 소요	임관 2년차 선발공석	지원자 (2년차)					경쟁비 (2년차)
			계	3사	학군	학사	기타	
'23년 선발결과	764	611	1,952	409	1,144	290	109	3.2:1
육군3사관학교 장기 전환시	304	243	1,543	-	1,144	290	109	6.3:1

1) 총 소요는 기본병과 소요(764석) 중 3사관학교 임관 인원 460명을 제외한 수

2) 임관 2년차 선발공석은 304석의 80% 수입.

* 기본선발(임관 2~5년) 선발 비율 : 2년차 80%, 3년차 10%, 5년차 10%

[육군3사관학교 장기복무 전환시 출신별 장기복무 선발 예상 경쟁비]

구 분	총 소요	임관 2년차 선발공석	획득경로별 선발인원 및 경쟁비							
			3 사		학 군		학 사		기 타 ³⁾	
			선발	경쟁비	선발	경쟁비	선발	경쟁비	선발	경쟁비
'23년 선발결과	764	611	166	2.5:1	327	3.5:1	57	5.1:1	61	1.8:1
육군3사관학교 장기 전환시	304	243	460	1:1	179	6.4:1	31	9.4:1	33	3.3:1

[육군3사관학교 장기복무 전환시 출신별 예상 장기복무 선발률]

구 분	총 소요	임관 2년차 선발공석	획득경로별 선발인원 및 선발률							
			3 사		학 군		학 사		기 타	
			선발	선발률	선발	선발률	선발	선발률	선발	선발률
'23년 선발결과	764	611	166	40.6%	327	28.6%	57	19.7%	61	56.0%
육군3사관학교 장기 전환시	304	243	460	100%	179	15.6%	31	10.7%	33	30.3%

3) 기타 획득경로로는 간부사관, 군종·법무 등 전문사관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육군은 現 인력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로 인하여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의 일률적인 장기복무 전환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미래 병력구조(소수획득-장기활용) 재설계 전까지는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제도(30%) 도입 등 현 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을 임관 시 장기복무 장교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간부들의 복무동기를 강화하고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와 현재 군의 인력구조 및 다른 획득경로로 임관한 장교(학군 장교, 학사 장교 등)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10